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 유형 II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누700바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	누700바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 유형 I, 유형II 수가 산정방법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II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 할 경우에 산정함. 2. 위 1항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사)-유형 I 로 산정함.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누700마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누700바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 항체 (간이검사) 누701아 정밀면연검사- C형간염항체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HCV Ab),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일 입원 기간 중 중복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위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p>2.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 하여 검사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p> <p>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p> <p>다. 위 2항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p> <p>3.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 하지 아니함.</p>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700바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간이검사)	누700바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간이검사)- 유형 I, 유형 II 수가 산정방법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함 2. <u>상기 1. 이외</u> 면역크로마토 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 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 검사)-유형 I 로 산정함	누700바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간이검사)	누700바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간이검사) 유형 I, 유형 II 수가 산정방법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II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함. 2. 위 1항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 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 로 산정함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유형 II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검체를 명확하게 명시
누700바 일반면역 검사-C형	C형간염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1.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 항체(HCV Ab), 누700바(1) 일반 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	누700바 일반면역 검사-C형	C형간염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1.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HCV Ab), 누700바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개정 사유) 간이검사 유형II 추가 및 선별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간염 항체 누700바(1)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 항체 (간이검사)- 유형 I 누701아 정밀면역 검사-C형 간염 항체		<p>검사)-유형 I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 바. (생략)</p> <p>사. <u>상기</u>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간염 항체 누700바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 항체 (간이검사) 누701아 정밀면역 검사-C형 간염 항체		<p>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u>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일</u> 입원 기간 중 중복검사는 인정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 바. (좌동)</p> <p>사. <u>위</u>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p> <p>2. <u>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u></p>	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누700바(2) 급여 기준 신설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p> <p>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 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p> <p>다. 위 2항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p> <p>3.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하지 아니함.</p>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2024.12.1.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p><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 급여기준 관련 모식도 ></p> <p style="font-size: small;">※'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항을 충족하는 경우</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Root["구강점막액 검체 & Ora Quick"] Root --- B1["응급실내원 응급수술 (관혈적시술 포함)"] Root --- B2["HCV 진단검사 장비 구비"] Root --- B3["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 & 당일처치"] B1 -- Yes --> Y1["유형 II"] B1 -- No --> N1["유형 I"] B2 -- Yes --> Y2["유형 I"] B2 -- No --> N2["유형 II"] B3 -- Yes --> Y3["유형 II"] B3 -- No --> N3["유형 I"] style Y1 fill:#cccccc style Y2 fill:#cccccc style Y3 fill:#cccccc </pre> </div>		
1	<p>‘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 검사를 구강점막액 검체가 아닌 다른 검체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 검사는 구강점막액 검체를 가지고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검사한 경우에만 산정 할 수 있음 ○ OraQuick 키트를 사용하였으나 구강점막액 이외의 검체(혈청, 혈장, 전혈 등)로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으로 산정해야함 <p style="font-size: small;">※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 유형 II 수가 산정방법 참고</p>
2	<p>구강점막액 검체로 검사를 시행하면 간이검사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로 산정 가능한가요?</p>	<p>‘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는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항의 가~사에 해당하는 급여대상 중 2항 다음의 가~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 가능</p>

연번	질 의	답 변
3	치과에서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C형간염 검사 시 산정해야하는 수가는?	<p>○ 연번 1, 2번 답변과 동일하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치과에서 구강점막액 검체로 C형간염항체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로 산정 -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는 있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여 구강점막액 검체로 C형간염항체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로 산정 - 구강 점막액 검체가 아니거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로 산정
4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응급수술을 위해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C형간염 검사 시 산정해야하는 수가는?	<p>○ 구강점막액 검체로 검사 시에는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로 산정가능하나 구강점막액 이외의 검체로 검사 시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으로 산정</p>
5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는?	<p>○ C형간염 고위험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여자의 HCV 선별검사가 시행되기 전(1991년 이전)에 혈액이나 혈액성분 제제를 받거나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 - 정맥주사 약물남용자 혹은 그러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 혈액투석 환자, HIV 감염자, 혈우병 환자 - HCV 감염자 혹은 다양한 파트너와 성적 접촉을 가진 경우 - HC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영아 - HCV 양성인 혈액에 오염된 기구에 찔리거나 점막이 노출된 보건의료 종사자 - 비위생적인 침술 문신 피어싱 등에 노출된 경우 <p>※ '질병관리청, 2022 C형간염 관리지침' 참고</p>